

이사회 회의록(2018-2차)

(2018. 4. 27 / 11:00 ~ 11:40)

학교법인 대 원 학 원

이사회 회의록(2018-2차)

회의소집 통보일자 : 2018. 4. 19	
이사정수 : 12명	재적이사 : 12명

1. 회의일시 : 2018. 4. 27(금) 11:00시

2. 회의장소 : 법인회의실

3. 참석이사 : 8명()

참석감사 : 1명()

기타 : 1명(교장)

4. 불참임원 : 이사 4명(), 감사 1명()

5. 회의안건 :

- 의안 제1호 : 법률위반 교사 직위해제(안)

6. 회의내용

- 이사장 :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임원을 제외하고, 재적이사 12명중 8명이 참석 하였기에 성원이 되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이어 전회 회의록을 낭독하라고 하다.
- 감사 : 2018-1차 이사회(2018.04.18) 회의록을 낭독하다.
- 이사 : 전회 회의록을 그대로 받기로 하자며 동의하자,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므로 전회 회의록은 그대로 받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의안 제1호 법률위반 교사 직위해제(안)

- 이사장 : 법률위반 교사의 직위해제(안)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다.
본(안)은 대원고등학교 교사의 법률위반공무원 수사상황 통보 사안이 2018년 4월16일 해당 학교 및 본 법인에 접수되었고, 2018년 4월 18일 대원고등학교 교원 인사위원회의 회의 개최 후 법인으로 직위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른 법률위반 교사 직위해제 요청(안)임을 설명하다.
직위해제는 일시적 잠정적 조치로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고, 사립학교법 제 58조의1항 4호에 의하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판명될 경우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직위해제 하고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할 수 있음을 법 규정과 함께 설명하다.

이어서

특별히 사안의 보고를 위해 참석한 대원고등학교 교장에게 부연 설명을 요구하다.

- 교장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4214(2018.04.16)으로 접수된 본 사안은 관악과 교사가 2000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대원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사 레슨비에 대한 10만원씩을 소개비로 받은 사안으로, 현재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안교실 관악과정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너무 크지 않을까 염려되어 법원에서 빠른 조치를 바라고, 관련법에 의한 절차와 경찰서의 수사가 진행됨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직위해제(안)이며, 교육현장에서 부끄러운 사안이 발생되어 송구함을 말하다.
- 이사 : 자료와 설명을 듣고 교육현장에서 발생 되서는 안 되는 법률위반행위들에 대하여 실감감을 표시하고 관련 자료와 법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해야 함에 동의하다.
- 이사 :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 : 본 안건인 법률위반교사 직위해제(안)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한 바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대원고등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 사립학교법 제 58조의 2에 의거하여 2018년 5월 1일 ~ 2018년 7월 31일까지 3개월의 직위해제를 명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결통과 되었음을 선언하다.

가결된 각 안건은 법 규정을 준수하고 관할청의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시켜 달라는 지시 후, 간 서명자를 본인과 이사, 이사를 지명하자 이사전원 일치로 승인하고 폐회를 선포하다. (11 : 40)

2018. 4. 27.

학 교 법 인 대 원 학 원

의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10/15/2014 < 00

11/27